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355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8.14.(금)	2026.08.24.(월)	2026.08.25.(화)	2026.08.26.(수)	2026.09.01.(화)	2026.09.03.(목) ~ 2026.09.12.(토)	2026.09.14.(월) ~ 2026.09.17.(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홀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30/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

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8.24.(월)	2026.08.25.(화)	2026.08.26.(수)	2026.09.01.(화)	2026.09.03.(목) ~ 2026.09.12.(토)	2026.09.14.(월)~ 2026.09.17.(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마루 상동 529-38번지) ■ 접수 방법, 일정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천,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역,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원마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08.21.)」에 따라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를 초과하는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외국인 등이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되오니, 외국인 등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은 해당 없으며,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9.01.(화))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공동주택과 - 33827호(2026.08.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8층 ~ 지상 49층 7개동 총 1,859세대

[특별공급 815세대(기관추천 137세대, 다자녀가구 185세대, 신혼부부 205세대, 노부모부양 55세대, 생애최초 96세대, 신생아 13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2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354	01	084.9199A	84A	084.9199	32.5031	117.4230	67.2470	184.6700	13.1985	224	22	22	33	7	15	22	121	103	5
	02	084.7123B	84B	084.7123	34.2420	118.9543	67.0826	186.0369	13.1662	84	8	8	13	2	6	8	45	39	2
	03	084.9874C	84C	084.9874	30.9904	115.9778	67.3004	183.2782	13.2090	353	35	35	53	11	25	35	194	159	8
	04	084.9074D	84D	084.9074	30.9718	115.8792	67.2371	183.1163	13.1966	89	9	9	13	3	6	9	49	40	2
	05	084.9872E	84E	084.9872	31.4961	116.4833	67.3003	183.7836	13.2090	178	18	18	27	5	12	18	98	80	4
	06	084.9928F	84F	084.9928	31.8439	116.8367	67.3047	184.1414	13.2098	442	45	45	66	14	32	45	247	195	10
	07	113.0966A	113A	113.0966	41.7523	154.8489	89.5598	244.4087	17.5778	224	-	22	-	6	-	-	28	196	5
	08	113.0705B	113B	113.0705	42.6914	155.7619	89.5391	245.3010	17.5738	84	-	8	-	2	-	-	10	74	2
	09	121.5813	121	121.5813	45.4159	166.9972	96.2788	263.2760	18.8966	178	-	18	-	5	-	-	23	155	4
	10	153.9148P	153P	153.9148	55.4429	209.3577	121.8833	331.2410	23.9220	1	-	-	-	-	-	-	-	1	-
	11	187.5097P	187P	187.5097	64.8849	252.3946	148.4868	400.8814	29.1434	1	-	-	-	-	-	-	-	1	-
	12	192.1528P	192P	192.1528	73.9524	266.1052	152.4722	418.5774	29.9812	1	-	-	-	-	-	-	-	1	-
합 계										1,859	137	185	205	55	96	137	815	1,044	42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199A	084.7123B	084.9874C	084.9074D	084.9872E	084.9928F	113.0966A	113.0705B	121.5813	153.9148P	187.5097P	192.1528P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153P	187P	192P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또는 [형]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나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각 동별 4층에 해당합니다.(단, 101동 1,4,5,6호 라인과 107동 1,2,3,6호 라인은 6층이 최하층입니다.)
- [P]가 포함된 타입은 펜트하우스를 의미하여, 103동 최상층에 위치합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 공동주택의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공급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의 주택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용검사 시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필지의 대지면적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택공급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되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고, 오차는 192P 타입에 할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측량 시 사업필지의 소수점 이하 대지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1	6	1	3	7	-	-	-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5	1	2	5	-	-	-	1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5	1	2	5	-	-	-	17
	장애인	경기도	4	2	7	3	4	7	-	-	27
		서울특별시	2	1	3	1	2	5	-	-	14
		인천광역시	2	1	3	1	2	6	-	-	15
	중소기업 근로자	4	1	6	1	3	10	-	-	-	2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11	4	18	5	9	23	11	4	9	9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1	4	17	4	9	22	11	4	9	91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13	53	13	27	66	-	-	-	20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2	11	3	5	14	6	2	5	55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6	25	6	12	32	-	-	-	96
신생아 특별공급		22	8	35	9	18	45	-	-	-	137
합 계		121	45	194	49	98	247	28	10	23	81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30일 이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27.10.28	2028.04.25	2029.01.23	2030.01.31	2030.07.23	2031.04.22	
84A	104동 1호	4층	1	638,133,300	888,866,700	-	1,527,000,000	10,000,000	66,350,000	152,700,000	152,700,000	152,700,000	152,700,000	152,700,000	152,700,000	534,450,000
		5층	1	644,401,800	897,598,200	-	1,542,000,000	10,000,000	67,100,000	154,200,000	154,200,000	154,200,000	154,200,000	154,200,000	154,200,000	539,700,000
		6-9층	4	651,088,200	906,911,800	-	1,558,000,000	10,000,000	67,9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545,300,000
		10-19층	10	657,774,600	916,225,400	-	1,574,000,000	10,000,000	68,700,000	157,400,000	157,400,000	157,400,000	157,400,000	157,400,000	157,400,000	550,900,000
		20-25층	6	668,222,100	930,777,900	-	1,599,000,000	10,000,000	69,95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559,650,000
		27-39층	13	677,833,800	944,166,200	-	1,622,000,000	10,000,000	71,100,000	162,200,000	162,200,000	162,200,000	162,200,000	162,200,000	162,200,000	567,700,000
		40층 이상	10	681,177,000	948,823,000	-	1,630,000,000	10,000,000	71,5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570,500,000
	105동 1호	4층	1	612,223,500	852,776,500	-	1,465,000,000	10,000,000	63,25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512,750,000
		5층	1	619,327,800	862,672,200	-	1,482,000,000	10,000,000	64,100,000	148,200,000	148,200,000	148,200,000	148,200,000	148,200,000	148,200,000	518,700,000
		6-9층	4	625,178,400	870,821,600	-	1,496,000,000	10,000,000	64,800,000	149,600,000	149,600,000	149,600,000	149,600,000	149,600,000	149,600,000	523,600,000
		10-19층	10	631,446,900	879,553,100	-	1,511,000,000	10,000,000	65,550,000	151,100,000	151,100,000	151,100,000	151,100,000	151,100,000	151,100,000	528,850,000
		20-25층	6	644,401,800	897,598,200	-	1,542,000,000	10,000,000	67,100,000	154,200,000	154,200,000	154,200,000	154,200,000	154,200,000	154,200,000	539,700,000
		27-39층	13	651,088,200	906,911,800	-	1,558,000,000	10,000,000	67,9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155,800,000	545,300,000
		40층 이상	10	654,013,500	910,986,500	-	1,565,000,000	10,000,000	68,250,000	156,500,000	156,500,000	156,500,000	156,500,000	156,500,000	156,500,000	547,750,000
	102동 6호 103동 6호 106동 1호	4층	3	593,418,000	826,582,000	-	1,420,000,000	10,000,000	61,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497,000,000
		5층	3	599,686,500	835,313,500	-	1,435,000,000	10,000,000	61,750,000	143,500,000	143,500,000	143,500,000	143,500,000	143,500,000	143,500,000	502,250,000
		6-9층	12	606,372,900	844,627,100	-	1,451,000,000	10,000,000	62,550,000	145,100,000	145,100,000	145,100,000	145,100,000	145,100,000	145,100,000	507,850,000
		10-19층	30	612,223,500	852,776,500	-	1,465,000,000	10,000,000	63,25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512,750,000
		20-25층	18	618,492,000	861,508,000	-	1,480,000,000	10,000,000	64,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518,000,000
		27-39층	39	624,760,500	870,239,500	-	1,495,000,000	10,000,000	64,750,000	149,500,000	149,500,000	149,500,000	149,500,000	149,500,000	149,500,000	523,250,000
		40층 이상	29	626,432,100	872,567,900	-	1,499,000,000	10,000,000	64,950,000	149,900,000	149,900,000	149,900,000	149,900,000	149,900,000	149,900,000	524,650,000
84B	101동 6호 107동 1호	6-9층	8	605,955,000	844,045,000	-	1,450,000,000	10,000,000	62,5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145,000,000	507,500,000
		10-19층	20	612,223,500	852,776,500	-	1,465,000,000	10,000,000	63,25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512,750,000
		20-25층	12	618,074,100	860,925,900	-	1,479,000,000	10,000,000	63,950,000	147,900,000	147,900,000	147,900,000	147,900,000	147,900,000	147,900,000	517,650,000
		27-39층	26	624,342,600	869,657,400	-	1,494,000,000	10,000,000	64,700,000	149,400,000	149,400,000	149,400,000	149,400,000	149,400,000	149,400,000	522,900,000
		40층 이상	18	626,432,100	872,567,900	-	1,499,000,000	10,000,000	64,950,000	149,900,000	149,900,000	149,900,000	149,900,000	149,900,000	149,900,000	524,650,000
84C	105동 2호 105동 5호 106동 5호 107동 5호	4층	4	625,596,300	871,403,700	-	1,497,000,000	10,000,000	64,850,000	149,700,000	149,700,000	149,700,000	149,700,000	149,700,000	149,700,000	523,950,000
		5층	4	632,282,700	880,717,300	-	1,513,000,000	10,000,000	65,650,000	151,300,000	151,300,000	151,300,000	151,300,000	151,300,000	151,300,000	529,550,000
		6-9층	16	638,969,100	890,030,900	-	1,529,000,000	10,000,000	66,450,000	152,900,000	152,900,000	152,900,000	152,900,000	152,900,000	152,900,000	535,150,000
		10-19층	40	645,237,600	898,762,400	-	1,544,000,000	10,000,000	67,200,000	154,400,000	154,400,000	154,400,000	154,400,000	154,400,000	154,400,000	540,400,000

		20-25층	24	658,610,400	917,389,600	-	1,576,000,000	10,000,000	68,800,000	157,600,000	157,600,000	157,600,000	157,600,000	157,600,000	157,600,000	157,600,000	551,600,000
		27-39층	52	664,461,000	925,539,000	-	1,590,000,000	10,000,000	69,5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159,000,000	556,500,000
		40층 이상	39	667,804,200	930,195,800	-	1,598,000,000	10,000,000	69,900,000	159,800,000	159,800,000	159,800,000	159,800,000	159,800,000	159,800,000	159,800,000	559,300,000
	101동 5호 102동 5호 106동 2호 107동 2호	4층	2	585,477,900	815,522,100	-	1,401,000,000	10,000,000	60,050,000	140,100,000	140,100,000	140,100,000	140,100,000	140,100,000	140,100,000	140,100,000	490,350,000
		5층	2	591,328,500	823,671,500	-	1,415,000,000	10,000,000	60,750,000	141,500,000	141,500,000	141,500,000	141,500,000	141,500,000	141,500,000	141,500,000	495,250,000
		6-9층	16	597,597,000	832,403,000	-	1,430,000,000	10,000,000	61,5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143,000,000	500,500,000
		10-19층	40	603,447,600	840,552,400	-	1,444,000,000	10,000,000	62,200,000	144,400,000	144,400,000	144,400,000	144,400,000	144,400,000	144,400,000	144,400,000	505,400,000
		20-25층	24	609,716,100	849,283,900	-	1,459,000,000	10,000,000	62,950,000	145,900,000	145,900,000	145,900,000	145,900,000	145,900,000	145,900,000	145,900,000	510,650,000
		27-39층	52	615,566,700	857,433,300	-	1,473,000,000	10,000,000	63,650,000	147,300,000	147,300,000	147,300,000	147,300,000	147,300,000	147,300,000	147,300,000	515,550,000
		40층 이상	38	618,492,000	861,508,000	-	1,480,000,000	10,000,000	64,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518,000,000
	84D	4층	1	626,850,000	873,150,000	-	1,500,000,000	10,000,000	65,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525,000,000
		5층	1	633,536,400	882,463,600	-	1,516,000,000	10,000,000	65,800,000	151,600,000	151,600,000	151,600,000	151,600,000	151,600,000	151,600,000	151,600,000	530,600,000
		6-9층	4	640,222,800	891,777,200	-	1,532,000,000	10,000,000	66,600,000	153,200,000	153,200,000	153,200,000	153,200,000	153,200,000	153,200,000	153,200,000	536,200,000
		10-19층	10	646,491,300	900,508,700	-	1,547,000,000	10,000,000	67,35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154,700,000	541,450,000
		20-25층	6	659,864,100	919,135,900	-	1,579,000,000	10,000,000	68,950,000	157,900,000	157,900,000	157,900,000	157,900,000	157,900,000	157,900,000	157,900,000	552,650,000
		27-39층	13	666,550,500	928,449,500	-	1,595,000,000	10,000,000	69,750,000	159,500,000	159,500,000	159,500,000	159,500,000	159,500,000	159,500,000	159,500,000	558,250,000
		40층 이상	10	668,222,100	930,777,900	-	1,599,000,000	10,000,000	69,95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559,650,000
		4층	1	585,895,800	816,104,200	-	1,402,000,000	10,000,000	60,1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140,200,000	490,700,000
		5층	1	592,582,200	825,417,800	-	1,418,000,000	10,000,000	60,900,000	141,800,000	141,800,000	141,800,000	141,800,000	141,800,000	141,800,000	141,800,000	496,300,000
		6-9층	4	598,850,700	834,149,300	-	1,433,000,000	10,000,000	61,65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501,550,000
		10-19층	10	604,701,300	842,298,700	-	1,447,000,000	10,000,000	62,35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144,700,000	506,450,000
84E	103동 5호	20-25층	6	610,969,800	851,030,200	-	1,462,000,000	10,000,000	63,100,000	146,200,000	146,200,000	146,200,000	146,200,000	146,200,000	146,200,000	146,200,000	511,700,000
		27-39층	13	616,820,400	859,179,600	-	1,476,000,000	10,000,000	63,800,000	147,600,000	147,600,000	147,600,000	147,600,000	147,600,000	147,600,000	147,600,000	516,600,000
		40층 이상	9	619,745,700	863,254,300	-	1,483,000,000	10,000,000	64,15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519,050,000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4층	4	641,058,600	892,941,400	-	1,534,000,000	10,000,000	66,7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536,900,000
		5층	4	648,162,900	902,837,100	-	1,551,000,000	10,000,000	67,550,000	155,100,000	155,100,000	155,100,000	155,100,000	155,100,000	155,100,000	155,100,000	542,850,000
		6-9층	16	654,849,300	912,150,700	-	1,567,000,000	10,000,000	68,350,000	156,700,000	156,700,000	156,700,000	156,700,000	156,700,000	156,700,000	156,700,000	548,450,000
		10-19층	40	660,699,900	920,300,100	-	1,581,000,000	10,000,000	69,05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158,100,000	553,350,000
		20-25층	24	674,072,700	938,927,300	-	1,613,000,000	10,000,000	70,650,000	161,300,000	161,300,000	161,300,000	161,300,000	161,300,000	161,300,000	161,300,000	564,550,000
		27-39층	52	681,177,000	948,823,000	-	1,630,000,000	10,000,000	71,5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163,000,000	570,500,000
		40층 이상	38	684,520,200	953,479,800	-	1,638,000,000	10,000,000	71,900,000	163,800,000	163,800,000	163,800,000	163,800,000	163,800,000	163,800,000	163,800,000	573,300,000
	84F	101동 3호 102동 3호 105동 3호	4층	6	630,193,200	877,806,800	-	1,508,000,000	10,000,000	65,400,000	150,800,000	150,800,000	150,800,000	150,800,000	150,800,000	150,800,000	527,800,000
		5층	6	636,879,600	887,120,400	-	1,524,000,000	10,000,000	66,200,000	152,400,000	152,400,000	152,400,000	152,400,000	152,400,000	152,400,000	152,400,000	533,400,000
		105동 4호 106동 4호	6-9층	24	643,566,000	896,434,000	-	1,540,000,000	10,000,000	67,000,000	154,000,000	154,000,000	154,000,000	154,000,000	154,000,000	154,000,000	539,000,000
		10-19층	60	649,416,600	904,583,400	-	1,554,000,000	10,000,000	67,7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155,400,000	543,900,000

	107동 4호	20-25층	36	663,207,300	923,792,700	-	1,587,000,000	10,000,000	69,350,000	158,700,000	158,700,000	158,700,000	158,700,000	158,700,000	158,700,000	158,700,000	555,450,000
		27-39층	78	665,714,700	927,285,300	-	1,593,000,000	10,000,000	69,650,000	159,300,000	159,300,000	159,300,000	159,300,000	159,300,000	159,300,000	159,300,000	557,550,000
		40층 이상	58	668,222,100	930,777,900	-	1,599,000,000	10,000,000	69,95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559,650,000
	101동 4호 102동 4호 106동 3호 107동 3호	4층	2	589,656,900	821,343,100	-	1,411,000,000	10,000,000	60,550,000	141,100,000	141,100,000	141,100,000	141,100,000	141,100,000	141,100,000	141,100,000	493,850,000
		5층	2	595,507,500	829,492,500	-	1,425,000,000	10,000,000	61,25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142,500,000	498,750,000
		6-9층	16	601,776,000	838,224,000	-	1,440,000,000	10,000,000	62,000,000	144,000,000	144,000,000	144,000,000	144,000,000	144,000,000	144,000,000	144,000,000	504,000,000
		10-19층	40	607,626,600	846,373,400	-	1,454,000,000	10,000,000	62,7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145,400,000	508,900,000
		20-25층	24	613,895,100	855,104,900	-	1,469,000,000	10,000,000	63,450,000	146,900,000	146,900,000	146,900,000	146,900,000	146,900,000	146,900,000	146,900,000	514,150,000
		27-39층	52	619,745,700	863,254,300	-	1,483,000,000	10,000,000	64,15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148,300,000	519,050,000
		40층 이상	38	622,671,000	867,329,000	-	1,490,000,000	10,000,000	64,5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149,000,000	521,500,000
113A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6호 105동 6호 106동 6호	4층	5	828,105,300	1,153,540,636	115,354,064	2,097,000,000	10,000,000	94,850,000	209,700,000	209,700,000	209,700,000	209,700,000	209,700,000	209,700,000	209,700,000	733,950,000
		5층	5	837,582,900	1,166,742,818	116,674,282	2,121,000,000	10,000,000	96,050,000	212,100,000	212,100,000	212,100,000	212,100,000	212,100,000	212,100,000	212,100,000	742,350,000
		6-9층	20	845,875,800	1,178,294,727	117,829,473	2,142,000,000	10,000,000	97,100,000	214,200,000	214,200,000	214,200,000	214,200,000	214,200,000	214,200,000	214,200,000	749,700,000
		10-19층	50	854,168,700	1,189,846,636	118,984,664	2,163,000,000	10,000,000	98,150,000	216,300,000	216,300,000	216,300,000	216,300,000	216,300,000	216,300,000	216,300,000	757,050,000
		20-25층	30	871,149,400	1,213,500,545	121,350,055	2,206,000,000	10,000,000	100,300,000	220,600,000	220,600,000	220,600,000	220,600,000	220,600,000	220,600,000	220,600,000	772,100,000
		27-39층	65	880,627,000	1,226,702,727	122,670,273	2,230,000,000	10,000,000	101,500,000	223,000,000	223,000,000	223,000,000	223,000,000	223,000,000	223,000,000	223,000,000	780,500,000
		40층 이상	49	885,365,800	1,233,303,818	123,330,382	2,242,000,000	10,000,000	102,1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784,700,000
113B	101동 1호 107동 6호	6-9층	8	850,614,600	1,184,895,818	118,489,582	2,154,000,000	10,000,000	97,700,000	215,400,000	215,400,000	215,400,000	215,400,000	215,400,000	215,400,000	215,400,000	753,900,000
		10-19층	20	859,302,400	1,196,997,818	119,699,782	2,176,000,000	10,000,000	98,800,000	217,600,000	217,600,000	217,600,000	217,600,000	217,600,000	217,600,000	217,600,000	761,600,000
		20-25층	12	876,283,100	1,220,651,727	122,065,173	2,219,000,000	10,000,000	100,95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776,650,000
		27-39층	26	885,365,800	1,233,303,818	123,330,382	2,242,000,000	10,000,000	102,1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224,200,000	784,700,000
		40층 이상	18	888,130,100	1,237,154,455	123,715,445	2,249,000,000	10,000,000	102,450,000	224,900,000	224,900,000	224,900,000	224,900,000	224,900,000	224,900,000	224,900,000	787,150,000
121	103동 3,4호	4층	2	877,467,800	1,222,302,000	122,230,200	2,222,000,000	10,000,000	101,100,000	222,200,000	222,200,000	222,200,000	222,200,000	222,200,000	222,200,000	222,200,000	777,700,000
		5층	2	886,550,500	1,234,954,091	123,495,409	2,245,000,000	10,000,000	102,250,000	224,500,000	224,500,000	224,500,000	224,500,000	224,500,000	224,500,000	224,500,000	785,750,000
		6-9층	8	895,633,200	1,247,606,182	124,760,618	2,268,000,000	10,000,000	103,400,000	226,800,000	226,800,000	226,800,000	226,800,000	226,800,000	226,800,000	226,800,000	793,800,000
		10-19층	20	904,715,900	1,260,258,273	126,025,827	2,291,000,000	10,000,000	104,550,000	229,100,000	229,100,000	229,100,000	229,100,000	229,100,000	229,100,000	229,100,000	801,850,000
		20-25층	12	913,798,600	1,272,910,364	127,291,036	2,314,000,000	10,000,000	105,7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809,900,000
		27-39층	26	923,276,200	1,286,112,545	128,611,255	2,338,000,000	10,000,000	106,9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818,300,000
		40층 이상	18	927,620,100	1,292,163,545	129,216,355	2,349,000,000	10,000,000	107,45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822,150,000
	104동 3,4호	4층	2	856,538,100	1,193,147,182	119,314,718	2,169,000,000	10,000,000	98,45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759,150,000
		5층	2	865,620,800	1,205,799,273	120,579,927	2,192,000,000	10,000,000	99,600,000	219,200,000	219,200,000	219,200,000	219,200,000	219,200,000	219,200,000	219,200,000	767,200,000
		6-9층	8	874,703,500	1,218,451,364	121,845,136	2,215,000,000	10,000,000	100,750,000	221,500,000	221,500,000	221,500,000	221,500,000	221,500,000	221,500,000	221,500,000	775,250,000
		10-19층	20	882,996,400	1,230,003,273	123,000,327	2,236,000,000	10,000,000	101,800,000	223,600,000	223,600,000	223,600,000	223,600,000	223,600,000	223,600,000	223,600,000	782,600,000
		20-25층	12	913,798,600	1,272,910,364	127,291,036	2,314,000,000	10,000,000	105,7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231,400,000	809,900,000
		27-39층	26	923,276,200	1,286,112,545	128,611,255	2,338,000,000	10,000,000	106,9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233,800,000	818,300,000

		40층 이상	20	927,620,100	1,292,163,545	129,216,355	2,349,000,000	10,000,000	107,45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234,900,000	822,150,000
153P	103동 5호	49층	1	1,875,775,000	2,612,931,818	261,293,182	4,750,000,000	10,000,000	227,500,000	475,000,000	475,000,000	475,000,000	475,000,000	475,000,000	475,000,000	1,662,500,000
187P	103동 1호	49층	1	2,261,592,300	3,150,370,636	315,037,064	5,727,000,000	10,000,000	276,350,000	572,700,000	572,700,000	572,700,000	572,700,000	572,700,000	572,700,000	2,004,450,000
192P	103동 3호	49층	1	2,384,406,200	3,321,448,909	332,144,891	6,038,000,000	10,000,000	291,900,000	603,800,000	603,800,000	603,800,000	603,800,000	603,800,000	603,800,000	2,113,30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 일조, 조망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보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기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부천시,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해당 시·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점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지역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해당 시·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table><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점수</th></tr><tr><td>계</td><td>100</td><td></td><td></td><td></td></tr><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tr><td>3명</td><td>35</td></tr><tr><td>2명</td><td>25</td></tr></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20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 <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 <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 <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 <td>3명</td><td>20</td><td></td><td></td></tr> <tr> <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body> </table>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 중 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8.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9,793,893원~	11,442,864원~	12,125,082원~	12,878,143원~	13,631,204원~	14,384,266원~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 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보주택 방안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지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화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화기간 : 2026.09.01.(화) ~ 2026.09.10.(목) (10일간) - 조화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9.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 제출 기간	접수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9.03.(목) ~ 2026.09.12.(토) 10:00 ~ 17:00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번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유의사항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 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 하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청약(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용/ 제출처 : 롯데건설(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유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확인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제외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복무확인서(복무기간 표기)	본인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부천시)으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본인 및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일반 공급	○		가점제 산정 기준표	본인	•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 임신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포함 ※ 아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상세”로 발급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 포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아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건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 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 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아래 [표1]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 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 임신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신생아 특별공급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 포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아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직계비속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아래 [표1]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아래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참고하여 발급
	○		부동산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생아 특별공급 추천제로 당첨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될 경우 제출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 신생아 특별공급 추천제로 당첨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 가격 열람 / 단독주택 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재산세 납부내역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신생아 특별공급 추천제로 당첨된 경우 -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이 불가한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임신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 발급(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위임용 / 제출처 : 롯데건설(주))
	○		인감도장		
	○		위임장		
	○		신분증	대리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등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①, ② 세무서 / 홈택

	면세사업자	② 사업자등록증명	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상기 서류가 없는 금년도 신규 취업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혹은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접수장소 (건본주택)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① 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 2조 제 2호의 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자산가액 증빙 (해당자)	①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 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수입인자(인자세)	본인	- 수입인자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공동 납부 <수입인자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자(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자 구입 후 출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 체결용 / 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본인발급분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아파트 계약 체결용 / 제출처 : 롯데건설(주))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당첨자	-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발급용도(직접작성): 아파트 계약위임용 / 제출처 : 롯데건설(주))
	○		인감도장	당첨자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위임장	당첨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 건축물철거결정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약	수협은행	1130-0065-2641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납부계약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 ※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수협은행 1130-0065-2656,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건보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리 등 대출조건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및 내부 여신정책, 사업장별 사업조건, 대출 규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 대출 실행 시기, 대출 취급 구조 및 계약자별 신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슷한 시기에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인근 사업장과 대출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언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리 차이, 대출조건 차이 또는 금융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분양대금의 60%)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대출 알선을 위하여 별도의 기관과 중도금 대출 주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관 수수료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제반 경비와는 별도로, 적격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시행위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조건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여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가 대납(단,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지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시행위탁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시행위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보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사업주체 / 분양계약자 각 1/2 납부)

「인지세법」 제 3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계좌부활요청서’(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3. 프리미엄 신발장 4. 현관팬트리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현관스타일업 1.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2. 대형 바닥타일 3. 프리미엄 신발장 4. 현관팬트리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121	3,608,000	360,800	3,247,200	-
거실	1. 거실 아트월 및 복도 유럽산 세라믹타일 2. 거실, 주방, 복도 벽/천장 도장 및 AL마이너스몰딩	84A, 84B	9,680,000	968,000	8,712,000	-
		113A, 113B, 121	16,148,000	1,614,800	14,533,200	-
	거실 스타일업 1.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타일 2. 거실, 주방, 복도 벽/천장 도장 및 AL마이너스몰딩	84C, 84D, 84E	7,469,000	746,900	6,722,100	-
		84F	6,512,000	651,200	5,860,800	-
	복도장 고급화	84A, 84F	1,287,000	128,700	1,158,300	-
		113A, 113B	1,397,000	139,700	1,257,300	-
마루	광폭 원목 마루	84A, 84B	9,218,000	921,800	8,296,200	-
		84C, 84D, 84E, 84F	8,228,000	822,800	7,405,200	-
		113A, 113B, 121	11,924,000	1,192,400	10,731,600	-
주방	주방 스타일업 1. 주방 외산가구(라마쿠치네) - 키큰장 제외 2. 주방 벽, 상판 유럽산 세라믹타일 3. 고급 주방수전(제시) 4. 외산 렌지후드(엘리카)	84A, 84B	21,593,000	2,159,300	19,433,700	-
	주방 스타일업 1. 주방 외산가구 업그레이드(라마쿠치네) - 키큰장 제외 2. 주방 벽, 상판 유럽산 세라믹타일 3. 고급 주방수전(제시) 4. 외산 렌지후드(엘리카)	113A, 113B	17,512,000	1,751,200	15,760,800	*113/121타입 주방 상 판 세라믹타일 디자인 선 택 가능
		121	25,740,000	2,574,000	23,166,000	
	주방 스타일업 1. 주방 외산가구(라마쿠치네) - 키큰장 제외 2. 주방 벽, 상판 유럽산 세라믹타일 3. 주방 아일랜드장 옆 벽면 유럽산 세라믹타일 4. 고급 주방수전(제시) 5. 외산 렌지후드(엘리카)	84C, 84D, 84F	22,737,000	2,273,700	20,463,300	-
		84E	25,432,000	2,543,200	22,888,800	
조명	조명 스타일업 1안(거실 스타일업 미선택 시) 1.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 거실/주방/복도/드레스룸 매입조명 3. 침실 직부조명(색온도/밝기 조절) 4.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5. 현관/복도 등박스 조성+간접조명	84B, 84C, 84D, 84E, 84F	5,357,000	535,700	4,821,300	-
		113A, 121	6,985,000	698,500	6,286,500	
	조명 스타일업 1안(거실 스타일업 미선택 시) 1.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 거실/주방/복도/드레스룸 매입조명	84A	5,357,000	535,700	4,821,300	-

	3. 침실 직부조명(색온도/밝기 조절) 4.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5. 복도 등박스 조성+간접조명	113B	6,985,000	698,500	6,286,500	-
	조명 스타일업 2안(거실 스타일업 선택 시) 1.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 거실/주방/복도/드레스룸 매입조명 3. 침실 직부조명(색온도/밝기 조절) 4.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5. 현관/복도 등박스 조성+간접조명	84B, 84C, 84D, 84E, 84F	6,534,000	653,400	5,880,600	-
		113A, 121	8,547,000	854,700	7,692,300	
	조명 스타일업 2안(거실 스타일업 선택 시) 1.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2. 거실/주방/복도/드레스룸 매입조명 3. 침실 직부조명(색온도/밝기 조절) 4.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5. 복도 등박스 조성+간접조명	84A	6,534,000	653,400	5,880,600	-
		113B	8,547,000	854,700	7,692,300	
욕실	욕실 스타일업 1. 유럽산 욕실 벽타일 (600*1200) 2. 욕실1 세면기, 욕실1,2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3. 욕실 1 ENG 젤다이 및 하부벽/욕조 에이프런 4. 욕실 2 샤워부스 고급화 5. 외산 수전(듀라빗) 및 고급 약세서리	84㎡ 전타입	8,690,000	869,000	7,821,000	-
	욕실 스타일업 1. 유럽산 욕실 벽타일 (600*1200) 2. 욕실1,2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스탠다드) 3. 욕실 1 욕조 에이프런 ENG 4. 욕실 2 샤워부스 고급화 5. 외산 수전(듀라빗) 및 고급 약세서리	113A, 113B	8,690,000	869,000	7,821,000	-
		121	9,009,000	900,900	8,108,100	
알파룸	알파룸 팬트리 1. 복도 팬트리 2. 침실 2 드레스룸	84A	2,574,000	257,400	2,316,600	-
	알파룸 드레스룸 특화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84B	2,695,000	269,500	2,425,500	미선택시 벽지마감, 일반 시스템가구 적용
안방	안방 드레스룸 특화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84A	3,993,000	399,300	3,593,700	옵션 미선택시 벽지마감, 일반 시스템가구 적용
		84B	4,598,000	459,800	4,138,200	
		84E	3,410,000	341,000	3,069,000	
	안방 드레스룸 1. 드레스룸 확장 2.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84F	6,336,000	633,600	5,702,400	
	안방 드레스룸 특화 1안 1. 대형 드레스룸(알파룸 통합), 슬라이딩 도어 2.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84C, 84D	7,480,000	748,000	6,732,000	
	안방 드레스룸 특화 2안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3,443,000	344,300	3,098,700	
	안방 드레스룸	113A, 113B	5,324,000	532,400	4,791,600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2. 가구도어 고급화	121	6,402,000	640,200	5,761,800	
침실1	불박이장	84B	1,298,000	129,800	1,168,200	-
	드레스룸 특화 1.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84F, 113A	4,092,000	409,200	3,682,800	-
침실2	불박이장	84C, 84D, 84E, 84F 113A, 113B	1,067,000	106,700	960,300	84F, 113A: 파우더형 그 외: 수납강화형
침실3	불박이장	121	1,298,000	129,800	1,168,200	수납강화형

- 바닥 마루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목마루의 특성상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세대간 마루의 색상 및 옹이의 유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가전기기 옵션

(단위 : 세대, VAT 포함)

구분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빌트인 가전 (삼성전자)	빌트인 냉장고 (1도어 냉장고 + 1도어 냉동고 + 1도어 김치냉장고 + 1도어 체결키트)	84㎡ 전타입, 113A, 113B, 121	5,800,000	580,000	5,220,000	냉장고(1도어) - (RR40C7995AP) 냉동고 (1도어) - (RZ34C7965AP) 김치냉장고 (1도어) - (RQ34C7945AP)
	빌트인 디자인 3구 인덕션		1,430,000	143,000	1,287,000	모델명 (NZ63DB657CAWS)
	빌트인 식기세척기(가구도어 부착형)		990,000	99,000	891,000	모델명 (DW80F71Y1SEW)
	빌트인 전기오븐 비스포크(삼성전자)		300,000	30,000	270,000	모델명 (NQ36A6588CW)
욕실 복합 환기휀(욕실1,2)			1,100,000	110,000	990,000	복합휀(휴젠뜨, 힘펠)
드레스룸 제습기(코스텔)			830,000	83,000	747,000	모델명 (CDD-800B)
프리미엄 전열교환기	1안 프리미엄 전열교환기(LG)_본체		1,980,000	198,000	1,782,000	모델명 84, 113 타입 (Z-E0150L2AR/R2AR) 121타입 (Z-E0250L2AR/R2AR)
	2안 프리미엄 전열교환기(LG)_본체+각실제어		3,940,000	394,000	3,546,000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는 일괄공급 옵션이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디자인 3구 인덕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비스포크 미선택 시 전기오븐(삼성 일반형)이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 선택 시 안방 드레스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세대, VAT 포함)

타입	품목	옵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일반형	선택1	거실+주방+안방	4,840,000	484,000	4,356,000
		선택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238,000	723,800	6,514,200
		선택3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8,008,000	800,800	7,207,200
	인피니티형	선택4	거실+주방+안방	6,138,000	613,800	5,524,200
		선택5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889,000	988,900	8,900,100
		선택6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1,154,000	1,115,400	10,038,600
84B, 84C, 84D, 84E, 84F	일반형	선택1	거실+주방+안방	4,840,000	484,000	4,356,000
		선택2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238,000	723,800	6,514,200
	인피니티형	선택3	거실+주방+안방	6,138,000	613,800	5,524,200
		선택4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889,000	988,900	8,900,100
113A, 113B	일반형	선택1	거실+주방+안방	6,292,000	629,200	5,662,800
		선택2	전실(거실1,2+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9,922,000	992,200	8,929,800
	인피니티형	선택3	거실+주방+안방	8,514,000	851,400	7,662,600
		선택4	전실(거실1,2+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3,585,000	1,358,500	12,226,500
121	일반형	선택1	거실+주방+안방	4,940,000	494,000	4,446,000
		선택2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449,000	944,900	8,504,100
	인피니티형	선택3	거실+주방+안방	6,226,000	622,600	5,603,400
		선택4	전실(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2,738,000	1,273,800	11,464,200
153P	일반형	선택1	거실+주방+안방	6,974,000	697,400	6,276,600
		선택2	전실(거실1,2+주방+침실1+침실2+마스터룸+마스터룸 거실)	12,562,000	1,256,200	11,305,800
	인피니티형	선택3	거실+주방+안방	9,042,000	904,200	8,137,800
		선택4	전실(거실1,2+주방+침실1+침실2+마스터룸+마스터룸 거실)	16,434,000	1,643,400	14,790,600
187P	일반형	선택1	거실+주방+안방	6,974,000	697,400	6,276,600
		선택2	거실1,2+주방+침실1+침실2+침실3+마스터룸+마스터룸 거실+알파룸	15,092,000	1,509,200	13,582,800
	인피니티형	선택3	거실+주방+안방	9,042,000	904,200	8,137,800
		선택4	거실1,2+주방+침실1+침실2+침실3+마스터룸+마스터룸 거실+알파룸	19,987,000	1,998,700	17,988,300
192P	일반형	선택1	거실+주방+안방	6,974,000	697,400	6,276,600
		선택2	거실1,2+주방+침실1+침실2+가족실+마스터룸+알파룸	13,827,000	1,382,700	12,444,300

인피니티형	선택3	거실+주방+안방	9,042,000	904,200	8,137,800
	선택4	거실1,2+주방+침실1+침실2+가족실+마스터룸+알파룸	18,139,000	1,813,900	16,325,1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택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천장형배관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별도 기본 냉매 및 드레인 매립/천장 배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자 보증하지 않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를 추가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리모컨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행사 시 세부 사양 등 상세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수협은행	1130-0065-2661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 이체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상기 지정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대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연기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해 책임 없음)
- 아파트 ‘공급금액’, ‘추가 선택옵션’ 등 납부계좌가 모두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 시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60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제 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한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제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에 의거, 적용 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그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입주자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에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차장 등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플레이라운지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장 등

■ 하자보수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12 단지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	당 사업장은 부천시 상동 540-1 주상복합 신축공사 대상지로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도로, 공원, 주차장, 단독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장 남서측 어린이공원 및 주변 도로(남측, 서측 가감차선 포함) 등은 단지 내 소유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계획된 기반 및 기부채납 시설로 당 사업부지 이외의 시설이며,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지의 대지경계 내에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공개공지 및 씬지형공지, 전면공지가 조성되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로 디자인(조경계획,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패턴, 폭)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인접하여 지하철 7호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고가도로, 공공공지, 동측 소풍터미널 출입구쪽 도시가스 정압기 등이 있으며, 생활권 침해(소음, 악취, 매연, 대기오염물질, 빛공해, 조망, 프라이버시 침해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북측 공개공지 인근에는 한전 지중변압기 및 노점판매대(가판대 등)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외관상 이질감, 소음, 냄새, 보행동선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제기, 위치변경 또는 철거 등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취소·해제·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지주변도로	단지 북측 72m 대로변(공공공지포함) 및 101동, 102동과 106동, 107동 사이에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101동 서측 및 102동 북서측, 107동 북측에 씬지형 공지가 위치하며, 또한 단지 북, 서, 남측 일부에 전면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 건축조례 및 상동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계획되었고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서 이로 인하여 보도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 및 씬지형 공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인이 부담하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주체 및 지자체에 전가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북측 72m도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중앙 통로는 인허가 협의에 따라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통로로 24시간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및 비용, 관리책임은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에 관리의무 이관 및 비용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동측에는 부천종합터미널소풍 주차장출입구 인근 도시가스 정압기 및 환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 측 보도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안전난간 없이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행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로에 인접한 일부 주동 및 세대에서는 차량 통행 등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남측 30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측 27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측 일부 구간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당 단지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남서측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주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 내 수경공간 및 물놀이 시설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동반 및 지도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안전요원이 배치될 수 있음. 또한 수질 정화 설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및 물놀이 시 발생하는 물튀김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 시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단지 북,남측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에 소음, 진동 및 시각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부천종합터미널소풍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단지 주변 광고판 및 광고판 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로인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 시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당 단지과 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단지 외부와의 레벨차이에 의한 계획변경 포함),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및 보행자 출입구간 등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전체 구역면적 37,599.00㎡ 중 남서측 공원 5,589.00㎡와 도로 2,041.30㎡를 기부채납하여 대지면적(사업부지) 29,968.70㎡로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당 사업장은 2024년 11월 부천 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부천시 고시 제2024-287호)를 득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당 단지는 2022년 7월 최초 건축경관통합심의 신청(2023년 6월 완료), 2023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접수(2024년 1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후 단지 조경 상품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주변시설	
대지경계	
인허가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각종 인허가, 자문 등에 따라 BI 위치 및 개소, 디자인 및 조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정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견본주택은 84A㎡, 84C㎡, 84F㎡, 113A㎡, 121㎡ 총 5개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동호수 배치에 따라 좌우반전될 수 있습니다.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 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를 활용해 생성한 자료(자료에 시활용 여부 표시)는 특성상 실제 설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홈페이지 내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어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아트웍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감형태, 천장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 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마감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현관 문틀 내측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분양홍보물은 가구, 가전 기기 등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이미지로 작성되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주택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안내문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CG, 일러스트, 이미지컷 및 개요 등)은 사전 홍보 시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9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제작물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안내서로, 실제 시공시 세대별 여건이나 단지 주변의 불리한 요소 등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분양계약서 확인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 월패드, 배선기구 및 통신·제어기기 등은 디자인, 사양, 위치가 변경되거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홍보물상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경,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업장 서남측에 조성 예정인 어린이공원 및 단지 주변도로는 도시기반시설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공 및 분양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	발주처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마감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마감재 목록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본 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재의 색상, 패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자재 특성에 따라 색상 및 패턴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인조대리석류(MMA,ENG)는 자재 제조 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 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역경계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차폐조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반전(각/문열림방향 등은 별도기준에 따름)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 출연 시 단지 내 미술작품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의 종류, 위치, 형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의해 최종 확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관디자인	당 단지의 주동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항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의 형태,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 시설물(난간디테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주동 하부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동의 동출입구부터 저층부 마감은 지정석재 및 금속마감, 도장마감이며, 동별 디자인에 따라 마감재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시설의 외부입면은 지정 석재 마감 및 지정 강판 혼합 마감입니다. 단, 외관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 시 외부입면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눈부심,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빗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방안전매트 구간과의 간섭, 소방차 등 각종 서비스 차량동선의 간섭으로 인하여 빗공해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옥탑 조명 및 경관조명에 따른 고층세대 눈부심 등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내부에 기둥,벽체 등은 색채 디자인 적용으로 일부 석재 및 일부 석재 뽕칠로 시공됩니다.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에 따라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설계기준은 관할 관청의 사업계획승인 도면 및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기준이며, 원활한 시공을 위한 세부 공사용 도면(구조도, 단면도, 설비도면 등) 및 관련 서류(감리보고서 등)는 시공자 및 감리자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여 향후 별도로 제공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계약자는 현장 여건의 반영, 구조·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도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하며, 향후 세부 공사용 도면 및 사업계획승인, 착공 관련 서류에 대한 공개를 시행·시공자 및 관할 관청에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 시 사전 견본주택 내 비치·게시되었던 기본 평면도(계약자가 공급받은 주택에 한함),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및 마감자재 목록표는 요청에 의할 경우 공개 가능합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E/V 101동 북서측 1개소(지하 2층~지상 2층), 102동 북서측 1개소(지하 2층~지상 2층) 및 동측 2개소(지하 2층~지상 1층), 103동 북서측 1개소(지하 2층~지상 2층) 및 남동측 1개소(지상 1층~지상 2층), 104동 북동측 2개소(지하 2층~지상 1층), 106동 서측 1개소(지하 2층~지상 2층/지하 1층 무정차), 107동 남서측 1개소(지하 2층~지상 2층/지하 1층 무정차)와 E/S 102동 1개소(지하 1층~지상 1층), M/W 102동 1개소(지하 1층~지하 2층) 103동 1개소(지상 1층~지상 2층)에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각 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계단은 101동 하부2개소, 102동 하부 2개소, 103동 하부 2개소, 104동 하부 1개소,105동 하부1개소, 106동 하부 2개소(공용 1개소 포함), , 107동

	하부 2개소, 중앙 브릿지 하부 1개소(공용 1개소 포함)가 설치되며, 단지 내 외부계단은 102동 북동쪽 1개소 및 107동 남서쪽에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각 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 1층 판매시설이 위치하고 판매시설 출입구는 101동 하부 1개소, 102동 하부 1개소, 104동 하부 1개소(직원용), 107동 하부 1개소가 설치되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동(101, 102, 104, 107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지상 1층에 판매시설 하역차량출입구 및 하역장이 위치하여 하역 및 관련 차량 출입에 의해 인접동(104동) 저층부는 빗공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역장 근처에 화물용 승강기도 함께 위치함에 따라 소음과 진동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과 106동 사이 지상 2층에 두 포디엄을 잇는 실내브릿지가 위치하고 해당 브릿지 상부는 지상3층에서 실외 브릿지로 사용하며, 브릿지 내부 및 하부에 지상 광장과 연결되는 공용계단실(피난용, 지하 8층~지상 2층)이 위치하여 단지 중앙 통행으로 인해 인접동(102동, 106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설비(집광판.인버터), 공용TV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됨.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 및 삭제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설치시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고,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단지 내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 I등급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의 OS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옥상부 및 일부 벽면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태양광인버터 장비소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위치 및 각도는 향후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내 공지,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주차관제 출차주의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총 668대(필로티내 설치분 포함, 공동주택 578대, 판매/근린생활시설 90대)로, 공동주택용 자전거보관소는 각 동 지상 1층과 일부 동 지하4층~지하5층 동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고,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자전거보관소는 104동 지상 1층 및 107동 뒤편 수에 위치하여 동별로 설치 여건 및 보관 가능한 개소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관소 설치로 인하여 일부 통행에 불편 및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보관대의 과도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는 2개층형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일부 노약자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동별로 자전거보관대의 사용 여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와 인접하여 키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마련될 수 있으며 해당 구획에 대한 사용 여건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 동 코어와 인접하여 지상1~2층에 외부 드라이에어리어(DA)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분양 이후 현장 여건 및 인허가 절차에 따라 자전거보관대는 추가 설치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은 10개소(공동주택용 7개소-101동~107동 지하 3층,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103동 지하 1층, 판매시설용 2개소-101동과 102동 사이 지하 1층 조업차량 하역존 인근, 104동 1층 남측 판매시설 하역장 인근)가 설치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하1층 내부공간에 설치되며 이를 상가에서 이용하기 위해 단지내 자상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관저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되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인허가 협의사항에 따라 청소차량은 필수확보 높이 3.50m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주택용 재활용폐기물창고는 각 동별 1개소로 설치되며 각 동 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가 상이합니다.
--	---

	각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내 조경시설물, 주차관제시스템,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DA 등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 폭, 경사 및 식재계획, 포장계획, 시설계획 등 전반적 조경계획은 상품 개선을 위해 변경될 예정임.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공간(놀이터, 운동공간, 쓰레기분리수거함, 소방정차구간 등)의 위치는 크게 변경되지 않으나 그 외 공간별 규모, 형태,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와 무관한 일반 공간(휴게공간, 보행자전용동선 등)의 계획은 위치를 포함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의 개선안이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소방(공기)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되며 인허가청의 의견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 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 및 삭제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용할 수 없으며, 관상용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단지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한전 인입구는 103동 지상 1층, 지하 1층~지하 2층 남측 및 104동 지상 1층 및 지하 1층 남측에 위치하고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 지상1층 소방차 전용 비상차량동선, 소방차전용구역 노면표기 및 보행로 일부 구간에는 단지 내 녹지율 확보를 위해 잔디블록이 시공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은 지면의 요철로 인해 일반 보행 및 유모차 이동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2동과 103동 사이 하부 공동주택 차량진입구와 연결되는 화차공간에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및 대기를 위한 공간(맘스스테이션)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에 통행 불편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 저층세대의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 내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부지는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급급 차량, 소방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 3층에는 공동주택용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장고를 적용합니다.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입주 시 사다리차 또는 지상 출입구를 통한 이사는 불가하며, 지하주차장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만 가능하고 이를 인지하여 입주와 이사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이사차량은 인허가 협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하 3층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의 유효 층고는 3.5m입니다. 입주 후 이사차량 운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판매시설 냉각탑은 104동 2층에 1개소, 105동 2층에 1개소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연기(수증기)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주동의 옥탑지붕층에는 소방성능심의 조건으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동 및 외부계단실 상부 옥상층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나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고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 3층 또는 최상층 옥상 외부공간에 거주자 이용이 가능한 조경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이의 식재 및 시설물 등의 구성, 형태, 규모 등은 변경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당 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준공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101동 지하 4층~지하 3층에는 공용주택용 기계실, 전기실, 소화가스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102동 지하 3층~지하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 전기실, 소화가스실이 위치하고 103동 지하 3층~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기계실, 소화수조 및 펌프실, 판매시설 공조실이 위치하고 104동 지하 1층에는 판매시설용 직원시설, 운영시설, 공조실 및 콤프레션실 등이 위치하고 105동 지하 3층~지하 2층에는 판매시설용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이 위치하고 106동 지하 3층~지하 2층에는 판매시설용 소화수조 및 소화펌프실, 중수조, 중수조펌프실, 우수조, 우수조펌프실 등이 위치하고 107동 지하 1층에는 지열기계실, 판매시설 공조실 등이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주동 26층에는 건축법 및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임의적으로 시설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난안전구역이 위치한 26층에는 기계실과 DA가 위치해 일부 구간 그릴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상하부 세대는 진동 및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동 옥상에 급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가수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옥상소화수조 및 펌프실은 101동, 104동, 107동은 지붕슬라브에 위치하고 102동, 103동, 105동 및 106동은
--	---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부층 옥탑에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팬룸은 101동~107동 지하 8층~지하 1층에, 제연팬룸은 101~104동 지하 1층, 105~107동 지하 2층에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1동 및 107동은 최고층이 48층이고 102~106동은 최고층이 49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준층 층고는 101동, 103동, 104동, 105동 및 107동은 3,000mm, 102동과 106동은 3,100mm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상 3층 층고는 101동, 107동은 3,000mm, 102동, 103동, 105동 및 106동은 7,500mm, 104동은 3,400mm로 계획되어 있고, 피난층 층고는 101동, 104동, 107동은 5,500mm, 102동, 103동, 105동 및 106동은 7,500mm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같은 층이라도 동별로 그 높이가 상이할 수 있고 동별 최고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01동 3~6호, 102동 3~6호, 103동 5~6호, 105동 2~4호, 106동 1~4호, 107동 1~4호는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에 의해 일조,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별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빛 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 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 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 출입구 및 주민공동시설 출입구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출입동선, 판매시설 출입동선, 공개공지 및 광장은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창고는 지하 8층 ~ 지하 3층에 위치하며 각 동별로 위치가 상이하하며 해당동 인근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01동 세대창고는 107동 지하 8층 ~ 지하 3층 북서측에 위치하고, 102동 세대창고는 102동 지하 7층 ~ 지하 6층 남측 및 103동 동측 지하 8층 ~ 지하 5층, 지하 3층에 위치하고, 103동 세대창고는 103동 지하 8층 ~ 지하 3층에 위치하고, 104동 세대창고는 104동 지하 8층 ~ 지하 3층 및 106동 지하 3층 동측에 위치하고, 105동 세대창고는 106동 지하 8층 ~ 지하 4층에 위치하고, 106동 세대창고는 106동 지하 8층 ~ 지하 3층에 위치하며, 107동 세대창고는 107동 지하 8층 ~ 지하 3층에 위치하여 세대별 세대창고 위치가 주동 코어 근처에 없을 수 있고 서로 상이하여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대창고는 창고 1열이 상하부로 나뉘어 2세대가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상 3층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복도, 엘리베이터 홀, 옥상 등 공용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 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점유 및 물건 적치는 금지됩니다.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엘리베이터홀 에어컨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3층 옥상정원	각 동 지상 3층에 1개층 조경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경공간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동 출입구 주변, 필로티 혹은 지상 3층 조경공간에 휴게공간, 운동공간, 놀이터 등의 조경공간 및 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장에 단차가 발생 가능합니다.
문주	당 단지는 여건상 문주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지 출입구	당 단지에 총 3개소의 단지 차량출입구(102동 서측 1개소, 104동 남측 2개소)가 있으며, 104동 남측 차량 출입구 2개소 중 서측출입구는 공동주택 전용 출입구이며, 동측출입구는 판매시설 하역장 전용출입구입니다. 102동 서측에 있는 차량 출입구는 공동주택/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사용하는 차량출입구입니다. 이에 따라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 및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하역장용 차량출입구는 104동 남측 하부에 위치한 판매시설 하역장으로 연결됩니다.
	104동 남측 공동주택 전용 차량출입구는 지하주차장 램프를 통하여 지하 3층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102동 서측 공동주택/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공용 차량출입구는 지하주차장 램프를 통하여 지하1층으로 연결되며 차단기를 통하여 공동주택용 램프동선과 판매/근린생활시설용 램프동선을 구분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용 램프는 차단기 이후 지하 3층으로 연결되어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까지 설치된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주차장은 판매/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 출입구	각 동의 지상 주동출입구는 1층과 3층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일부 주동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된 통로가 설치됩니다.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각 동의 지하1층은 지하주차장, 판매시설 등 로비 외부로 나가는 주동 출입구가 없고, 해당 층은 설비/전기 시설 등을 점검을 위한 층입니다. 또한 지하 2층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서 주동 출입이 가능한 주동 출입구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지상 3층에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공간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장에 단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동	101동 서측에는 씰리형공지, 동측에는 공개공지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북측에는 폭 72m 도로(단지 외 도로) 및 버스정류소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하부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용 승강기가 지하 2층~지상 2층까지 설치 및 운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동과 102동 사이에는 보행자출입구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출입구가, 102동 동측에 근린생활시설 보행자 출입동선(옥외계단) 및 지상 2층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하부 지하 4층~3층에 공동주택용 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며, 남동측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하부 지상 1층 및 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하부 지상 3층 남측에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하부 지상 1층~지상 2층 북,동,남,서측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2동 동측에 공개공지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남측 및 북측에 보행자 출입구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서측에 폭 27m 도로(단지 외 도로)와 접하여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출입구와 남측에 어린이버스전용 차로, 회차 및 승하차공간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2동 동측에 판매시설 출입구 및 판매시설 홀이, 북서측에 근린생활시설 출입구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2동 하부 지하 3층 북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 전기실, 소화가스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2동 하부 지상1층 및 지상 2층에 DA, 판매MDF, 판매방재실, 근생MDF, 근생방재실, 숙직실, 근생 실외기, 근생 운영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하부 지상 2층(실내) 및 지상 3층(옥외) 동측에 106동과 연결되는 브릿지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하부 북측에 101동과 102동 사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용 승강기가 지하 2층~지상 2층까지 설치 및 운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동 지상 3층에는 주민운동시설-1(실외)이, 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1(실외 및 조경공간), 남측에는 수경시설이 있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2동 하부 지상 1층 ~ 지상 2층 북, 동, 남, 서측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3동 동측에는 광장, 남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북측 및 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북측에는 근린생활시설 보행자 출입동선(옥외E/S)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3동 북측에는 어린이버스전용 차로, 회차 및 승하차공간이, 북서측에 대기공간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3동 서측에 폭 27m 도로(단지 외 도로)와 접하여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출입구와 북측에 어린이버스전용 차로, 회차 및 승하차공간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3동 하부 지하 3층 북동측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북측에는 근린생활시설용 기계실, 소화수조 및 펌프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3동 하부 지상 1층에 공동주택 방재실 및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MDF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하부 지상 1층 및 지상 2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이 계획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하부 지상 3층 북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1(실외), 북측에는 수경시설이 있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3동 하부 남서측에 단지 주민공동시설 출입동선(승강기)가 지하 4층~지상 3층까지 설치되고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2층은 무정차로 운행될 예정이며, 지상 3층 서측 1개층 게스트룸, 남측 및 동측 1개층으로 설치된 다이닝 공간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3동 남측에는 주민공동시설 출입구가, 102동과 103동 사이에는 보행자출입구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3동 하부 지상 1층~지상 2층 북,동,남,서측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3동 하부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용 승강기가 지하 2층~지상 2층까지 설치 및 운행되고, 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용 승강기가 지상 1층~지상 2층까지 설치 및 운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동 서측에는 어린이공원(기부채납)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4동 남측에는 폭 30m 도로(단지 외 도로)가 위치하고, 동측에는 부천종합터미널 차량출입구와 터미널 관련 시설(도시가스 정압기) 등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4동 남측에는 공동주택용 차량출입구 및 판매시설 하역차량용 차량출입구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4동 남서측에는 보행자출입구와 소방차진입로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북서측에는 판매시설 출입구(직원용), 북동측에는 판매시설 하역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북측에는 차량출입구와 연결되는 램프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하부 지하 3층 북서측에는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지상1층 남측에는 판매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4동 하부 지하 1층 북서측에는 판매시설 공조실이 위치하고, 북측인 104동과 105동 사이에는 판매시설의 운영시설과 직원시설, 냉동냉장 관련 시설들이 위치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하부 지상 2층 북측에는 판매시설 냉각탑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하부 지상 3층 북서측에는 어린이놀이터-2(실외), 북측에는 수경시설이 있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4동 하부 지상 1층 ~ 지상 2층 북, 동, 남, 서측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4동 하부 북측에 판매시설용 승강기가 지하 2층~지상 1층까지 설치 및 운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동 서측에는 광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남측에는 차량출입구와 연결되는 램프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동측에는 부천종합터미널 차량출입구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5동 북측에는 보행자통로와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돌봄센터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5동 하부 지하 3층 및 지하 2층 북측 및 동측에 판매시설용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 등이 설치되며, 북서측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하부 지하 1층에는 판매시설이, 남측인 104동과 105동 사이에는 판매시설의 운영시설과 직원시설, 냉동냉장 관련 시설들이 위치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하부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하부 지상 2층 서측에는 판매시설 냉각탑과 실외기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지상 3층 서측에는 어린이놀이터-2(실외), 남측에는 수경시설이 있는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5동 하부 지상 1층 ~ 지상 2층 북,동,남측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6동 서측에 공개공지 및 근린생활시설 출입구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동측에 부천종합터미널 차량출입구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6동 하부 지하 3층 남측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 판매시설 소화수조 및 소화펌프실, 우수조 및 중수조, 기계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6동 북측 및 동측에 3개층(지하 1층 ~ 지상 2층)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6동 하부 지상 1층 및 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하부 지상 2층(실내) 및 지상 3층(옥외) 동측에 102동과 연결되는 브릿지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6동 하부 지상 3층 북측에 단지 주민공동시설 출입동선(옥외계단, 승강기)이 지하 8층 ~ 지상 3층까지 설치되고, 지하 2층은 무정차로 운행될 예정이며, 지상 3층 북동측에 1개층으로 설치된 경로당으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6동 지상 3층 북측 및 서측에는 어린이놀이터-3(실외) 및 휴게공간, 남동측 일부공간에는 주민운동시설-2(실외)와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6동 하부 지상 1층 ~ 지상 2층 동측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6동 하부 서측에 근린생활시설용 승강기가 지하 2층 ~ 지상 2층까지 설치되고 지하1층은 무정차로 운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동 하부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시설의 법정시설인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7동 북측에 폭 72m 도로(단지 외 도로) 및 버스정류소가 위치하며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7동 동측에 부천종합터미널 차량출입구 및 터미널 관련 시설(환기구)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7동 서측에 공개공지, 북측에 썬지형공지가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 환경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하부 지하 3층 북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지하 1층 북측 및 서측에 지열기계실 및 판매시설 공조실, 지하 8층 북동측에 지열기계실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7동 남측 및 동측에 3개층(지하 1층 ~ 지상 2층)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7동 하부 지상 1층 및 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하부 남측에 단지 주민공동시설 출입동선(계단, 승강기)가 위치하고, 승강기는 지하 8층~지상 3층까지 설치되며 지하 2층은 무정차로 운행될 예정이며, 계단은 지하 1층 ~ 지상 3층까지 설치됩니다. 하부 동측에는 단지 주민공동시설용 승강기가 지하1층~지상 2층까지 설치되고 운행될 예정입니다.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7동 하부 지상 3층 남측에 1개층으로 설치된 용역원휴게실에 의해, 저층세대의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7동 및 106동 사이에 주민공동시설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보행자 출입구(옥외계단, 승강기) 및 휴게공간, 공개화장실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지상 3층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2(옥외) 및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7동 하부 지상 1층~지상 2층 서측, 동측, 북측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7동 하부 남서측에 근린생활시설용 승강기가 지하 2층~지상 2층까지 설치되고 지하 1층은 무정차로 운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I 사인물은 101동(옥탑부1개소), 102동(옥탑부1개소, 측벽1개소-비조명형), 103동(옥탑부1개소, 측벽1개소), 104동(옥탑부1개소, 측벽1개소), 105동(옥탑부1개소), 106동(측벽1개소-비조명형), 107동(옥탑부1개소) 주동 최상층 옥탑구조물 및 측벽에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가각부 및 주요 출입구 포디움 상단에 조명형으로 5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BI 위치 및 디자인은 분양홍보물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위치 및 조명방식의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1동, 107동에 커튼월록이, 103동, 104동 BIPV가 각 1개소 적용될 예정입니다. 커튼월록과 BIPV가 설치되는 주동 옥탑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색상, 재료 및 위치 등은 분양홍보물과 모형자료를 참조하되, 본시공 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협의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 색상, 재료,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단지 바닥가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또는 지상출입구를 통한 이사는 불가하며,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동 지상 3층~지상 49층 엘리베이터 공용홀에는 개폐 가능한 창호 1개소가 설치되며 코어별 창호사이즈 및 채광정도는 상이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용홀의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이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폐기물보관함,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동 하부 지하 1층 ~ 지하 2층 제연팬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게 제연팬룸 급기 DA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시공사 팬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각동1, 2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1동~107동은 코어별 6대(피난용 1대, 비상용 5대포함)의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 용량, 속도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전 필요 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8층까지 8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2층 ~ 지하 1층 판매시설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으로 인하여 주동과 연결된 주차장은 6개층입니다.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 2층 및 지하 8층 ~ 지하 4층까지의 주행통로 높이는 2.30m이며,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지하 1층 및 지하 3층의 주행통로 높이는 3.50m로 계획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차 및 물품 상·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용 출입구가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높이는 출입층 ~ 지하 3층까지 3.5m이며, 지하 3층 ~ 지하 8층까지 2.3m로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겸용 출입구와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램프의 높이는 출입층 ~ 지하 1층까지 3.5m, 지하 1층~지하 8층까지 2.3m로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택배차는 지하 3층으로 출입하고,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택배 및 조업차량은 지하 1층으로 출입합니다. 지하주차장 지하 1층 ~ 지하 2층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구역입니다. 지상 1층의 공용 지하주차장출입구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시 지하 1층에서 공동주택용 램프 및 차단기를 지나 지하 3층에 위치한 공동주택 주차공간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102동 하부, 104동 하부, 104동과 105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의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차량출입구의 일부는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기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은 지하 8층~지하 1층까지,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2,888대, 판매/근린생활시설 431대, 총 3,319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테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에 설치되며, 급속충전기 30개소, 완속충전기 118개소, 이동형콘센트 143개소 총 291개소 설치 예정임. 판매시설 및 근린시설용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1층에 설치되며 급속충전기 13개소, 완속충전기 12개소, 이동형콘센트는 22개소 총 47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추후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및 충전대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추가설치는 불가하며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준공 후 운영은 시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전기차 충전기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의 주체는 관리사무소와 임대위의 결정 사항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지하 8층~지하 1층) 팬룸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인접 주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제습 및 냉난방을 위한 에어컨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되며 지하주차장의 보행자의 동선간섭 및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최하층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되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의 위치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형태는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었으며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 및 마감은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업장은 집단에너지 의무지역으로 판매시설은 냉각탑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 및 보행도로에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는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101동~103동, 105동~107동 하부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용 관리사무소 및 주민회의실, 방재실, MDF실에는 103동 하부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106동 하부 지상 3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인근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주차장, 지상 1층 및 커뮤니티센터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가 105동과 106동 사이 하부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 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의 체결할 예정입니다. 실내 운동시설은 106동~107동 하부 지하 1층~지상 2층에 설치되며, 지하 1층에는 실내골프클럽, 사우나가 설치되고, 지상 1층에는 GX, 멀티스포츠, 실내수영장, 샤워/탈의실이 설치되며, 지상 2층에는 피트니스클럽이 설치됩니다. 피트니스 내부에는 GX 및 멀티스포츠, 실내 골프클럽까지 연결되는 운동시설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복도를 통해 로비 및 홀에 설치된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북카페) 및 문화시설(독서실, 키즈플레이라운지 등)은 106동 하부 지상 2층에 설치되며, 복도를 통해 로비 및 홀에 설치된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주차장 및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접근이 가능함. 작은도서관 내부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대공간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수 없으며,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듀클럽 내 키즈플레이라운지, 북카페를 제외한 일부 공간에 관리형 독서실로 운영될 예정이나, 위탁운영업체와의 계약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L-다이닝카페는 103동 하부 지상 3층에 설치되며,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층 접근이 가능하며, 주방 운영 시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103동 하부 지상 3층 L-다이닝카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며, 경로당 인근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주차장, 지상 1층 및 커뮤니티센터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부대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은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게스트룸 등)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냉방장치가 설치됩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차량화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맘스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 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보양 카탈로그, 커뮤니티 CG 등)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설	101동~107동 지하층에 물탱크실, 우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빗물이용시설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보관소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 3층 각동 코어별 1개소가 공동주택 주차장에 설치됨. 단, 추후 본공사시 그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및 제공품목	단위세대는 대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침실, 주방/식당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와 현관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분양세대(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153P㎡, 187P㎡, 192P㎡)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동 내 세대간 층단차이 발생구간의 외부 노출세대는 단열재 적용에 의하여 상층부세대와 하층부세대의 사용면적이 상이할수 있습니다(법적면적은 동일함).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형태 및 크기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콘센트 등),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은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천장 물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거실 우물천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다만,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장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물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4A㎡, 84B㎡, 84C㎡, 84D㎡, 84E㎡, 84F㎡, 113A㎡, 113B㎡, 121㎡, 153P㎡, 187P㎡, 192P㎡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도록 계획하여 비상시 아래층 세대로 대피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 피난기구는 상하층 좌우 교차되어 설치됨으로 같은 타입이라도 층별/동별 그 위치가 상이하며, 해당 시설 주변에는 가구,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하향식피난구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입주 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은 총 5개 타입(84A,84C,84F,113A,121)이 건립되어있으며, 미건립 타입은 함께 컨셉이 묶인 건립 타입의 마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 컨셉 : 84A,84B / 84C,84D,84E,84F / 113A,113B,121 세대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및 건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건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의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조대리석류(MMA,ENG) 및 세라믹 타일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몰딩, 시트판넬, 목도어, ABS천장 등의 마감 시공을 위하여 타카자국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타일, ENG, 마루, PET, LPM 등의 마감재는 자재 특성상 본 공사 시 일부 컬러, 패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장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내경치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욕실은 층상배관 형식으로 설치되며, 이 점을 인지하고 계약전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펜트하우스는 하부 세대와 욕실 등 배치가 일부 상이하여 층상으로 횡주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 시 거실, 복도 등에서 마감재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 세대 내부로 횡주배관이 설치되어 우수를 처리할 수 있고, 유지보수를 위해 거실복도 등 마감재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세대에 면하는 테라스는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용면적으로, 유지보수 사유 발생 시 세대를 통하여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입주자는 유지보수 작업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
	날개형 주동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인접 세대간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약 2.5m로 마주하여 인접해 있으며, 특정 타입의 경우 일부 창호 개방 시 맞은편 세대의 외벽 또는 창호 등이 인접하여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개방감 저하 및 세대 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모형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설계 변경이나 시공 보완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 단지의 세대 천장고는 2,400mm(욕실은 2,300mm)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호의 크기, 주방/일반가구의 수납공간, 목창호 크기는 최하층 세대도 기준층 세대와 동일합니다.
	세대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방문을 닫을 경우 진동으로 초음파 현관센서등이 작동될 수 있는 경우 하자사유가 아닙니다.
	각 세대별 기본 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과 유상 옵션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 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 가전/ 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 위치에 포세린 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주택형 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벽체, 천장, 바닥의 마감재의 우수한 시공을 위해 적용되는 몰딩,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형태와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84타입은 욕실2에 카운터형 세면대(언더볼), 113/121타입은 욕실1,2에 카운터형 세면대(언더볼)이 기본 제공됩니다. 세면대 하부에는 하부장이 적용되며 장 내부에는 카운터 제작을 위한 금속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뒷판에는 수도 연결을 위한 타공 부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노출은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84E 타입은 안방 드레스룸에 원 슬라이딩도어가 기본 제공됩니다. 슬라이딩도어의 크기, 위치,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시공 용이성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1타입은 욕실2에 더블 세면대와 욕조 에이프런 ENG이 적용되었으며 천장 마감재는 시공 용이성, 고품질 마감을 위해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1타입은 안방과 침실1의 통합형 또는 분리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분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의 피트 공간을 전용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력벽/비내력벽을 일부(전부)철거하여 확장하는 등의 구조변경은 불가합니다.
가구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장 포함)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 하부장은 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분배기 설치 위치와 수량(팬트리에 추가 설치가 될 수 있음)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펜트타입의 경우 싱크 하부장 외에 팬트리 내부에 추가적으로 난방분배기가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설치위치와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 쿡탑 선택 세대는 가스배관을 위한 상판 타공이 제외되며, 향후 가스쿡탑으로 변경을 원할 시 타공 및 배관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욕조의 자재는 표면경도가 낮아 사용 시 미세 흠집이 발생되기 쉬우며, 이는 제품 자체의 특성으로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창호의 프레임에는 도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외부에 세대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됩니다.
	창호는 PVC 이중창 또는 PVC 단창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타입의 안방에는 시스템 창호가 적용되며, 나머지 실은 일반 PVC 조망형이중창 또는 PVC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113B 타입의 경우 높이 1,240mm의 주방창호가 적용되며 나머지 타입은 높이 600mm의 낮은 주방창호가 설치됩니다.
	지상 18층 이하 일부 세대의 창호는 비상시 소방관 진입창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해당 창문 주변에는 가구,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창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입주 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위치변경 및 창호 변경 등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1타입 및 펜트하우스 욕실에 창호가 설치되는 경우, 시스템단창(벤트형)이 설치되며 욕실의 다습환경 특성상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테라스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방지장치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하향식피난구, 실외기실 등의 비화장 부위의 바닥 레벨은 시공성을 위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시공성을 위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건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나누기도는 시공성을 위해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된 피난사다리의 착지 지점이 높은 층의 일부세대는 중간 참을 거쳐서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3P, 187P, 192P의 테라스에 설비 통기배관, 선홍통, 배수구 등 설비공간이 추가되어 시각적(미관상), 사용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2P 테라스 상부에 옥탑장식탑 설치로 인하여 일부 천공 조망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확장발코니,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주방 및 화장실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설치되는 세대는 온도조절기가 설치 되지 않으며 인근 방 및 거실의 온도조절기와 연동되어 조절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스 입상배관은 실외기실 혹은 다용도실 내부에 노출 설치되며, 본공사시 인허가 및 공사여건에 따라 건물외벽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실 혹은 다용도실에는 가스배관과 계량기가 노출 설치되며,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이 렌지후드 상부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유선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별도 매립배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매립시공되어 있더라도 하자보증 제외)
	세대 내 천장속 배관 및 덕트 설치 등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 전열교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장비사양 및 풍량 기준에 따라 수량 및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직배기 시 고층여건에 의하여 욕실 배기팬 및 주방렌지후드 가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콘센트 등)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식탁등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품목이며 스마트홈IoT 가전연동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화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 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통신단자함은 세대 내부 침실 도어 후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기본 제공으로 설치되는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 주광색 등으로의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조명 중 거실등에 한하여 감성조명(색온도+디밍 조정)이 적용됩니다.
	기본 제공되는 네트워크 스위치 중 거실에 한하여,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설치되고, 안방 및 침실, 주방 네트워크 스위치는 밝기와 색온도 기능이 없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적용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따라, 각 세대 거실 창호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수분양자 개별 추가설치용) 전용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해당 콘센트는 추후 태양광 발전시설 계통 연계를 위한 콘센트입니다. 세대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추후 수분양자 설치 분으로 시공사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PV 태양광은 102, 103, 104, 105, 10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BIPV 태양광은 103동, 104동 남측 입면에 설치됩니다.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주방 스타일업 선택 시 자동식소화기는 후드 본체 내부에 설치되며 컨트롤러는 후드 조작부 근처에 설치 됩니다.
	당 사업장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역난방)으로 별도 난방기 설치가 불가하며, 별도 개별 난방기 설치에 의한 훼손 및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본공사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또는 SP헤드가 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창문개방에 따른 동파발생의 귀책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 : 101동, 103동, 104동, 106동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지하 1층 : 판매 EPS/TPS(2개소) - 101동 ~ 107동 지상 8층 : EPS/TPS - 101동 ~ 107동 지상 20층 : EPS/TPS - 101동 ~ 107동 지상 32층 : EPS/TPS - 101동, 107동 지상 43층 : EPS/TPS - 102동 ~ 106동 지상 44층 : EPS/TPS 중계장치 설치 위치가 세대 인근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설치 주체 : 기간통신 사업자)
	주방가구 내,외부에 콘센트 및 전기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전기국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초과 전기국립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합니다.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월패드는 인증 및 보안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및 기타 사유로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제품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전체 유상옵션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선택 시에 따라 건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로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유상옵션 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유상옵션 품목의 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 불가하며, 상세 사항은 추후 반드시 옵션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품목의 일부만을 지정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상옵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합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전시 가구, 소파, 러그, 조명 등은 관람을 위한 전시 품목으로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관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84타입의 경우 바닥타일(600X1200), 고급 신발장(템바도어, 하부 간접조명), 현관 중문이 적용됩니다. 옵션 품목의 구성, 길이, 컬러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오니 추후 반드시 옵션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미선택 시, 바닥 타일(600X600), 기본 신발장이 제공되며 현관 중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현관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113,121타입의 경우 바닥타일(600X1200), 프리미엄 신발장(유리도어, 빗각 선반, 내부 조명), 현관 중문, 팬트리 벽판넬형 시스템가구가 적용됩니다. 옵션 품목의 구성, 길이, 컬러 등은 타입별로 상이하오니 추후 반드시 옵션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미선택 시, 바닥 타일(600X600), 기본 신발장, 기본 팬트리(중앙지주형 시스템가구)가 제공되며 현관 중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현관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현관 중문의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1픽스+1스윙 중문:84A,84C,84D,84E,113A,113B / 3연동 슬라이딩 수동: 84B,84F,121) 중문 프레임의 컬러, 유리의 패턴 및 컬러는 컨셉 별로 동일합니다. 옵션 설치 유무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현관의 크기, 디딤판의 위치 및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현관 중문은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실제 적용되는 현관 중문은 추후 옵션 계약 시 반드시 샘플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및 복도 유럽산 세라믹타일과 거실,주방,복도 벽/천장 고급 도장은 마이너스몰딩(AL)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보강재가 적용되어 안목치수가 기본형과 달라집니다.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아트월은 기본 아트월 타일(600X1200,아시아산)이 적용되고 벽 시트판넬, 천장 천장지, 플러스몰딩(PVC)이 적용됩니다. -거실 아트월 및 복도: 84A,84B,113A,113B,121 / 거실 아트월: 84C,84D,84E,84F
	거실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세라믹타일의 컬러 및 패턴은 자재 특성상 본 공사 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양중, 시공 용이성을 위해 커팅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 시공 용이성을 위해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실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벽/천장 고급 도장은 자재 특성상 본 공사 시 컬러, 광택, 표면 마감 등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용이성, 하자 관리, 우수한 마감을 위해 도장의 재료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실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벽/천장 고급 도장은 자재 특성상 금속 천장들이 우물천장과 커튼박스에 적용되어 있으며,시공 용이성, 하자 관리, 고품질을 위해 천장 디테일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실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된 마이너스몰딩(AL)은 기본 몰딩과 보이는 형태가 상이하며, 몰딩의 마이너스면 기준으로 천장고보다 높으며 그에 따라 벽체와 천장의 마감재의 길이, 물량 등이 기본형과 달라집니다. 몰딩과 가구, 목도어, 타일 등의 높이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우수한 마감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외산 주방가구(최고급), 벽/상판 유럽산 세라믹타일, 외산 수전, 외산 렌지후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목치수, 가구의 높이 및 수납량 등이 기본형과 달라집니다. 옵션 미선택 시, 84타입은 국산가구(기본형), 113/121타입은 외산가구(기본형)이 적용되며, 벽/상판은 엔지니어드스톤으로, 국산 수전과 국산 렌지후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외산 주방가구(최고급)는 상부장의 도어 마감, 하부장의 형태, 간접조명 등이 적용되며, 냉장고장은 제외되어 국산가구로 제공됩니다. 외산 가구 특성상 자재의 생산에 따라 컬러, 패턴, 사이즈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하드웨어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세라믹타일의 컬러 및 패턴은 자재 특성상 본 공사 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시공 용이성을 위해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3,121타입에 한해, 주방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세라믹타일 상판의 디자인을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품목은 각 컨셉 별, 타입 별에 정해진 마감재의 컬러, 패턴, 디자인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방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외산 자재, 수전, 후드 등은 본 공사 시 제품 단종,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견보주택에 적용되어 있는 거실 스타일업과 주방 스타일업의 세라믹타일의 패턴 별 설치 위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본 공사 시 자재의 수급, 시공 순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타일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광목 원목마루(W:165) 옵션 선택 시, 전실(발코니 제외) 바닥에 원목마루가 적용됩니다. 옵션 미선택 시 전실 강마루(W:115)가 기본 제공됩니다. 원목마루 자재 특성상 웅이, 나뭇결, 결 방향 차이 등은 천연 목재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과 거실/주방/복도/안방,드레스룸에 고급 매입조명, 침실/주방 고급 직부조명,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복도/현관 등박스 조성 및 간접조명이 제공됩니다. 옵션 미선택 시에도 각 공간의 기본형 조명이 적용됩니다. 거실/주방 우물천장, 거실/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복도 현관 등박스 조성 및 간접조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형별 우물천장의 크기, 조명의 설치 위치,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평면에는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A,113B 조명 스타일업 중 현관 등박스 조성 및 간접조명은 제외됩니다.)
	조명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에 의해 우물천장의 마감, 몰딩 등이 간접조명을 설치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또한, 본 공사 시 고품질을 위해 천장 디테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명 스타일업 선택 시에 복도와 현관의 일면에 우물천장과 같이 간접조명이 적용된 등박스가 조성됩니다. 평형 별로 해당 옵션의 적용 위치, 길이 등이 다르므로 추후 옵션 선택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선택 시, 복도와 현관 천장은 기존 천장고 높이의 평천장이 적용됩니다.
	조명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각 매입조명, 직부조명, 간접조명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실 스타일업/조명 스타일업을 함께 선택한 경우의 간접조명을 설치하는 우물천장과 등박스의 천장 디테일과 거실 스타일업 미선택/조명 스타일업 선택한 경우의 천장 디테일은 각각의 벽/천장 마감재 차이에 의해 상이하게 적용되오니 추후 옵션 계약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실 스타일업/조명 스타일업을 함께 선택한 경우의 거실 아트월/복도 세라믹 타일의 높이와 거실 스타일업 미선택/조명 스타일업 선택한 경우의 높이가 등박스 조성에 의한 벽체 높이 차이에 의해 상이하게 적용되오니 추후 옵션 계약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트인 냉장고(삼성 1도어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빌트인 냉장고(삼성 1도어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옵션 선택 시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수납형 키큰장이 함께 제공됩니다.(84C,84D,113A,113B 제외)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 옵션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수납장이 제공됩니다.
	빌트인 전기오븐(삼성 비스포크) 옵션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빌트인 전기오븐(삼성 일반형)이 제공됩니다.
	빌트인 쿡탑(삼성 3구 인덕션)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빌트인 쿡탑(삼성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됩니다.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빌트인 쿡탑(삼성 3구 인덕션) 옵션 미선택 시 가스쿡탑을 설치를 위한, 가스배관 및 가스차단기가 주방벽체에 설치가 됩니다.
	건립세대에 설치 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보주택용 냉난방을 위한 시스템에어컨으로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및 장비의 크기, 스펙이 달라지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열교환기 옵션 선택 시 별도의 환기전용 컨트롤러가 주방 스위치 상부에 설치되며, 기본 제공되는 환기 겸용 온도조절기로는 환기 전열교환기가 제어되지 않습니다(온도조절기 기능만 가능).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스위치 상부의 옵션 전열교환기용 컨트롤러는 미설치 되며, 전열교환기 제어는 거실에 있는 환기 겸용 온도조절기를 통하여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열교환기 옵션 선택 시 옵션용 별도의 디퓨저가 설치되며, 미선택시 디퓨저는 일반 디퓨저가 설치되어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욕실 복합환기팬 옵션 미선택 시 일반 욕실 고정압팬이 설치 적용됩니다.

	욕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욕실 벽 대형타일(600X1200), 욕실1 젠다이 하부(84타입) 및 욕조 에이프런 ENG, 외산 수전, 외산 도기, 욕실2 고급 샤워부스, 고급 약세서리가 적용됩니다. 옵션 미선택 시, 욕실 벽 국산타일(300X600), 젠다이 ENG, 국산 수전, 국산 도기, 기본 샤워부스, 기본 약세서리가 적용됩니다. 기본 제공품목 및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로 상이하오니 추후 계약 시에 견본주택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대형타일(600X1200)은 자체 특성상 생산 과정에서 타일 크기의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바닥 타일과 벽 타일의 줄눈의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적용되는 마감재(타일, ENG, 약세서리 등)은 제조사의 품질, 단종,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본 공사 시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욕실 약세서리는 니켈 색상의 제품이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 크롬도금제품이 설치됩니다.
	드레스룸 제습기 옵션 미선택시 별도의 장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드레스룸 특화(침실1,알파룸,안방)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에 벽판넬형 시스템가구가 설치됩니다. 일부 선반에는 조명을 위한 안정기함 이 설치되어 수납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기본형/옵션형의 형태는 타입 별로 상이하오니 추후 계약 시에 견본주택 및 옵션계약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실1,알파룸 드레스룸 특화는 일부 타입만 해당하오니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도장 고급화 옵션 선택 시, 복도장의 도어가 하프미러+AL손잡이로 하프미러 복도장이 적용됩니다. 옵션 미선택 시 PET마감의 기본 복도장이 적용됩니다. (복도장 고급화는 일부 타입만 해당하오니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A: 알파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복도 팬트리(중앙지주형 시스템가구), 침실2 드레스룸(중앙지주형 시스템가구)이 적용됩니다.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알파룸(시스템가구 미제공)으로 적용됩니다.
	84C,D: 드레스룸 특화1,2 중 한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현재 견본주택은 특화1(알파룸 통합 대형 드레스룸)이 적용되어 있으며, 특화2 선택 시 동일한 마감의 벽판넬형 시스템가구가 드레스룸에 적용됩니다.
	84F: 안방 드레스룸 특화 선택 시, 드레스룸 크기가 확장되며 벽판넬형 시스템가구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안방 크기가 작아집니다.
	거실 직/간접조명의 경우, 거실 마감 옵션 선택시 선택가능하며, 세대형별 우물천장의 크기,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 직부등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타입에 한하여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직/간접조명 포함)의 경우, 옵션 선택시 선택가능하며 세대형별 우물천장의 크기,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타입 미제공 옵션 미선택 시 단천장, 원형 다운라이트로 조명 시공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옵션의 경우, 거실 및 침실(안방제외)은 감성조명(디밍+색온도 조정)이 적용되며, 침실(안방)은 디밍조명만 적용됩니다.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져, 천장물딩 및 커튼박스, 걸레반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작물 및 인쇄물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건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사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상담 관련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당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함. 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 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 행위 2. 계약 후 환매 또는 전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 거래 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 행위 5. 중도금대출 또는 잔금대출을 보장하는 행위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②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됩니다.

13 기타사항

■ 지하주차장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호

구분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6.0m 이상	3.5m 이상(주차면 2.1m)	3.5m 이상
지하 2층	6.0m 이상	2.3m 이상(주차면 2.1m)	
지하 3층	6.0m 이상	3.5m 이상(주차면 2.1m)	
지하 4 ~ 8층	6.0m 이상	2.3m 이상(주차면 2.1m)	

※ 주차통로 폭 양방향 6.0m, 일방향 4.0m / 높이 공동주택 전용: 출입층~지하 3층 3.5m, 지하 3층~지하 8층 2.3m / 공동주택 및 판매 근생 겸용 : 출입층~지하 1층 3.5m, 지하 1층~지하 8층 2.3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 48조 제 3항 및 제 48조의 3 제 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내진 I 등급
------	---------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 I 등급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제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열원시스템은 지역난방사용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및 「주택법」 제 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부천 상동 홀플러스부지 개발계획

2. 신 청 자 : 한국자산신탁(주)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번 540-1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열량공급을 차단하는 능력	★★
2. 열량공급을 차단하는 능력	★★
3. 세대 간 열교환의 차단능력	★★★★
4. 보온층(도도, 창도)에 대한 일차적 소용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용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관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가온냉각의 경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채광 차단	★
3. 도광차 밀도·절도량(채광가·조광가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면 간섭방지 대책의 적절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소비량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제1차 에너지 효율의 적용	★★★★
9. 소용층 보충을 위한 특별설비의 사용 유무	★★★★
10. 환경설비(배출기)의 사용	★★★★
11. 제1차 에너지 사용	★★★★
12. 자립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방출 차단 대책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자원관리	★★★★
17. 벽돌 및 유출지하수 이용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명 : 부천 상동 홀플러스부지 개발계획

건축주 : 한국자산신탁(주)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번 540-1

층 수 : 지하8층, 지상40층

면 적 : 417,656.6030㎡ (평가면적: 417,656.6030㎡)

건축물 용도 : 복합(공동주택+판매시설)

설 계 자 : (주)나우등인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6-0459-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6.04.30.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9호 환경부령 제2023-172호, 인증기준 통합제정(2023.07.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그린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명 : 부천 상동 홀플러스부지 개발계획(공동주택)

인증번호 : 26-주-에-14-0042

평가자 : 김도이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소비비율 건축설계	0	에너지소비비율	89.8	CO ₂ 배출	48
에너지소비비율 건축실제	0	에너지소비비율	10	CO ₂ 배출	20.6

에너지 소비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난방	50.8	62.8	10.6
급탕	30.7	36.6	6.1
조명	8.3	8.3	3.0
환기	1.9	5.3	0.9
합계	89.8	107.6	20.6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제1,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등 5등급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1차에너지소요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한국부동산원장

- 75 -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동등 수준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는 현장여건 및 관련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신청접수번호 : m-RAPA-2509-2580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부천시 상동 540-1 구상학원 신축공사
공사 장소(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 도시철도 ()
2. 건축주 제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항	
옥외안테나 설치장소	1 옥상층 : 101동, 103동, 104동, 106동
중계장치 설치장소	'상세 협의 결과' 참조
접지(단차) 위치	각층의 중계장치 용로로부터 최대한 거리
침입단차 위치와 용량	※ 배선반침입 및 대일 건축물 (상세 협의도면의 이동통신 중계장치 위치 및 용량 산출표 참조)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주요 공개예정
침입신청 접수 예정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입회가서 및 사업계획면담신청서 사본 1부 제공 ② 건축설계 신청된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건축(건축)공급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건축주는 "설치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공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제 35조~39조를 준수하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내판,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5년 10월 21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한국자산관리(주)	김규철
대리인	(주)건일엔지니어링	남상우 (인도인)

기간통신사업자 협의회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국립중앙도서관

- 1/3 -

신청접수번호 : m-RAPA-2509-2580 호

상세 협의 결과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 옥상층 : 101동, 103동, 104동, 106동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 101동, 103동, 104동, 106동 2 지하1층 : 평통(4개소) 3 지하5층 : 평통(4개소) 4 지하3층 : 평통(4개소) 5 지하1층 : 평통(2개소), 판(4개소/TPS/2개소) 6 지상4층 : 각 동 EPS/TPS 7 지상2층 : 각 동 EPS/TPS 8 지상3층 : 각 동 EPS/TPS 9 지상4층 : (101동, 103동) EPS/TPS 10 지상4층 : (102동~105동) EPS/TPS
--

3. 기타 협의사항

-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 건축주 제공 필수 보안사항 (플래그마크 '작업통보' 확인에 동의)
① 입회가서 및 사업계획면담신청서 사본 1부
② 집배통신 작곡도면 1부
※ 배선반 침입단차 및 용량 확보 확인을 위한 도면 포함 (권리인계도면, 분전반설치(영도)도 각 1부)
③ 건축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요청일
④ 공사현장입장지 (인물, 연락처 등)
⑤ 건축주 : 건축주 및 건축사, 건설사, 통신설계사, 시공사,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일 이전까지 설치할 것을 협의함
※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일체하지 않거나 준공에 일체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비소요할 소모)가 불가하여 공사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에서 시공사(건축사)에게 반드시 전달 되어, 건축주에 선포되어야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요.

※ 공동주택의 옥상에 중계장치/옥외안테나 설치 시, 건물 침입단차를 옥상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선반침입, 배선 대상 건축물 등 별첨된 배선 대상지 이동통신 중계기류, 배선반을 포함하여 산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접수번호 : m-RAPA-2509-2580 호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

※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위치 공개 이후 설계변경 또는 현장시공 단계에서 협의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변동사항을 입주예정자(계약자)에게 제공지 하여야 함.

게시구분	게시방법	예시
건 본 주택	모델 하우스	① 단지 모델도에 '이동통신중계설비' 표시한 부착 ② 건물주체 내 '상호협의결과서' 게시
	사이버 건물 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① 단지 조감도에 중계설비 설치 위치 표시 ② 홈페이지 내 상호협의결과서 제공 ③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게시
	인주자외집 광고문	● "유의사항" 등에 협의결과에 따른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위치(제4항 등)를 배정없이 기술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도면 및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와 공동주택 입주자(한국전력공사)와 공동주택 입주자(한국전력공사)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반영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 반드시 확인 후 행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4동, 106동 옥상층 및 옥상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102동 평통, 105동 평통

- 3/3 -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	------	------

제 01282026-101-0007200호	2,083,454,1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아파트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 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 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택무자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칭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칭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자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66-9009)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미래도시, 시행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본 공급물건은 시행위탁자인 (주)미래도시가 시행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주)미래도시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②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③ 본 공급물건이 개별 계약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미래도시와 시행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이 매도인 및 사업주체, 수탁자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 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업무, 공법상 의무 및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업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인 (주)미래도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④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공급금액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는 등)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⑤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미래도시 및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 (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시 분양계약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본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 (주)미래도시이며, 한국자산신탁(주)는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범위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⑦ 시행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대출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한국자산신탁(주)에 분양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⑧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⑨ 본 관리형태지신탁 내용은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주)동일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건축사사무소 테크뱅크	(주)동화이엔씨	(주)세종씨엠건축사사무소	(주)나라기술단
감리금액	7,436,732,978원	3,710,944,600원	3,696,100,822원	1,875,608,170원	3,211,093,100원	583,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1-32709	220-81-71530	752-86-00309	118-81-20761	117-81-19918	211-81-98909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행자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명
상호명	한국자산신탁(주)	주식회사 미래도시	롯데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6, 4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법인등록 번호	110111-2196304	134511-0224309	110111-0014764

■ 홈페이지 :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30/main/index.do>

■ 견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번지

■ 분양문의 : 1551-3555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